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1992년 9월 17일

제출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1. 提案經緯

가. 19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양운섭위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가결

2. 提案理由

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려는데 있음.

3. 主要骨子

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실시 (안 제2조 제1항)

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함 (안 제2조 제3항)

다.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 의장은 감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함. (안 제2조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 3 조 제2항중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반려한다”를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 2 조(감사) ① <u>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u></p> <p>② <u>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③ <u>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u></p>	<p>제 2 조(감사) ① <u>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되 상임 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p> <p>③ <u>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④ <u>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u></p>
<p>제 3 조(조사)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u></p>	<p>제 3 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u>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u>조사특별위원회</u>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p> <p>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u>반려한다.</u></p>	<p>③<u>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u>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u></p>